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509742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559,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22. 7. 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마케팅 대금 채무 합계 6,801,201,614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23. 1. 18. 기준 마케팅 대금 채무 잔액이 4,024,559,4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피고는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24,559,4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